

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일	
신고인	성 명		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		
신고내용	사용 해역	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 및 같은 영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			
	사용기간				
	사용시기				
	포획대상물의 종류				
	사용어구의 규모	폭(1 폭: 깊이 m, 길이 m)			
	그물코의 규격	내망 mm 이상, 외망 mm 이상			
사용어선	어선의 종류		선 명		
	어선번호		톤 수		
		주 어업	그 외의 어업	그 외의 어업	
근해자망어업 · 연안자망어 업의 허가내용	허가번호				
	어업의 종류				
	허가기간				

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
용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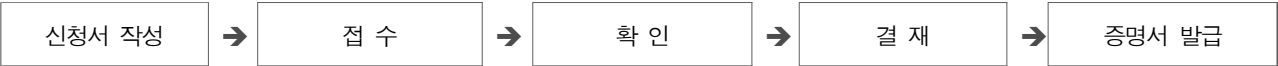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지사
경상북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(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, 근해자망어 업의 허가를 한 시·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) 1부	수수료
		조례에 따름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경상북도 또는
경상북도의 시·군·구

경상북도 또는
경상북도의 시·군·구

경상북도 또는
경상북도의
시·군·구